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499호
2. 발 의 자 : 김형재 의원
3. 발의일자 : 2026년 2월 9일
4. 회부일자 : 2026년 2월 12일

### II. 제안이유

-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과 과제 수행이 일상화되고 있으나, 수행평가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 간 평가의 공정성 훼손, 학습 성취도의 왜곡, 교사의 평가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이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, 기존 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·학부모·교직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,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### Ⅲ. 주요내용

가. 제9조(인공지능윤리 지침)에 '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' 항목 추가(안 제9조제6호)

### 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없음
2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3. 입법예고 : 2026. 2. 20. ~ 2. 24.(의견 : 없음)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6년 2월 9일 김형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499호로 발의되어 2026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- 동 개정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(AI)의 보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,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지침에 명시하고자 발의되었음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인공지능윤리 지침의 내용에 ‘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임.
- 동 개정안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조제1항 및 제3항<sup>1)</sup>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‘공정성 확보’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와 함께, 같은법 제62조제1항<sup>2)</sup>의 지능정보사회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판단됨.

1)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·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·활용하거나 지능정보 서비스를 제공·이용할 때 안전성·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·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2) 제62조(지능정보사회윤리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·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·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·책무성·통제성·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,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
2.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
3.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
4.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

- 또한, 동 개정안은 최근 교육 현장의 화두인 AI 대필 등 성적 산출의 왜곡 문제를 해소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침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교사가 수행평가 시행 전 AI 활용의 범위와 채점 기준 등을 명확히 수립하도록 독려하고, 학생에게는 출처 표기 등 올바른 디지털 윤리 역량을 함양하도록 돕는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, 현행 조례 제9조(인공지능 윤리 지침)의 입법 취지 및 체계상 완결성을 높이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.
-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“의견 없음”으로 회신하였음.(행정관리담당관-2277, 2026.2.20.)
- 참고로 지난 2025년 12월 23일 교육부는 전국 시·도교육청과 합동으로 「수행평가 시 인공지능(AI) 활용 관리 방안」<sup>3)</sup>을 마련하여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재발 방지와 함께 안전한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원칙<sup>4)</sup>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음.
  - 구체적으로는, ① AI 활용 범위 설정, ②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, ③ 학생 유의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, ④ 평가 설계 방향, ⑤ 개인정보보호 등 5가지 핵심 영역을 관리 원칙으로 확정하였음.

3) 교육부 보도자료, 2025.12.23. ‘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‘수행평가 시, 인공지능(AI) 활용 관리 방안’을 마련하였습니다’  
<https://www.moe.go.kr/boardCnts/viewRenew.do?boardID=294&boardSeq=104984&lev=0&searchType=null&statusYN=W&page=1&s=moe&m=020402&opType=N>

주) “이번 관리 방안은 수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, 인공지능(AI)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.”

4) [표-1] (교육부-교육청 공동)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기본원칙

- | 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AI는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을 위해 수업·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, 평가의 공정성·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</li> </ul>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교사가 직접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</li> </ul>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실제 평가 상황에서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하고,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·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해야 함</li> </ul>           |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이진석(2180-8266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## [붙임] 학습 활동지 <예시>

### 활동1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계획하기

◆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보세요.

AI에게 던진 질문	<i>프롬프트 기록</i>
AI 답변 중 내가 채택한 아이디어와 그 이유	<i>선별 과정 기록</i>
AI 답변 중 내가 불채택한 아이디어와 그 이유	<i>선별 과정 기록</i>



글의 유형	
글의 주제 및 선정 이유	<i>주제 선정 과정 기록</i>
정보 전달 대상 및 선정 이유	<i>독자 분석 기록</i>

### 활동2 자료 탐색·분석·요약하기

◆ 자신이 선택한 대상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탐색·분석·요약해 보세요.(AI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출처 확인 및 표기 필수)

AI가 제공한 주요 정보	
AI가 제공한 정보의 출처 확인	<i>AI 제공 정보의 신뢰성 확인 과정</i>
AI가 제공한 정보의 활용 방식 및 이유	<i>직접 활용/요약/수정/참고 등</i>
⋮	⋮



자료 요약 정리	<i>AI 제공 정보의 출처 표기 포함</i>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# 활동3 글의 개요 작성하기

◆ 글의 처음, 중간, 끝에 들어갈 내용과 각 단계에서 활용할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.

단계	주요 내용	활용할 자료
처음		
중간		
끝		